

다문화가족 학생 지원규정

□ 제정 : 2017.01.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원대학교(이하 ‘본교’ 라 한다) 다문화가족 학생에게 적절한 교수·학습환경을 제공하고, 대학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다문화가족 학생” 이라 함은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와 제4조에 따라 출생 시 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나 귀화 허가를 받은 자로 이루어진 가족의 학생으로 학생생활지원 위원회에서 인정한 학생 모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에서 수강하는 다문화가족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4조(교수·학습지원) 본교는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수·학습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우선 수강신청 및 수강신청 지원
2. 기타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수, 학습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

제5조(대학생활지원) 본교는 다문화가족 학생의 대학생활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숙사 등의 대학생활 지원
2. 다문화가족 학생 상담
3. 진로상담, 취업준비 지원 등의 진로지원
4. 취학편의 및 편의시설 지원
5. 기타 학생생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지원

제6조(심사청구) ① 다문화가족 학생 및 보호자는 학업 및 대학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본교는 2주 이내에 지원여부 및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신상자료관리) ① 다문화가족 학생에 관한 신상자료 관리를 총괄한다.

제8조(신고) 다문화가족 학생은 입학 직후 소속 학부(과)장에게 다문화가족 학생임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다문화가족 학생정보 제공) ① 교무입학처는 효율적인 교수·학습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

족학생이 수강하는 강좌의 교·강사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다.

② 다문화가족 학생에 관한 정보를 교·강사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학생의 사전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해당 교·강사는 정보보호 의무를 숙지하여야 한다.

제10조(다문화가족 학생지원위원회)다문화가족 학생 교육·복지 지원의 기본방침과 주요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다문화가족 학생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동 위원회는 학생생활지도위원회가 한다.

제11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다문화 가족학생의 교수·학습 지원에 관한 사항
2. 다문화 가족학생의 생활·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3. 다문화 가족학생의 상담·진로에 관한 사항
4. 다문화 가족학생 지원제도의 개선 및 지원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다문화 가족학생 인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다문화 가족학생 학습지원에 관련된 제반사항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한 학기에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제정 규정은 2017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으로 종전의 다문화가족 학생 지원규정은 시행된 것으로 본다.